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2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5누22998(병합) 지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세무서장 2. ■■■광역시 ■■■구청장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5013, 5358(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 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4,199,338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광역시 ■■■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2014. 3. 3.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본세 6,107,140원, 가산금 622,890원(합계 6,730,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4,199,338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구청장이 2013. 8. 1.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6,730,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합계 6,739,030원"을 "합계 6,730,03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

○ 제1심판결 제7면 제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손지호

 판사 박준용

 판사 문상배